

한국모태펀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변경 공고

한국모태펀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중 일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변경사항 : 중진계정 해외진출 분야 추가(출자예산 300억원 추가) - 변경 전 : 중진계정 1,610억원 (총 3,510억원 내외) - 변경 후 : 중진계정 1,910억원 (총 3,810억원 내외)

2. 추가 출자분야의 주목적 투자 대상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최대 출자비율
중진	해외진출	○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해외진출의 범위 : 1)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2)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3)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4)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해외법인(국내 중소·벤처기업 지분율이 50% 이상)등. 단, 이 경우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40%

2017. 2. 22.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한국모태펀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7년도 한국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 개 요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3,810억원 내의 (중진 1,910억원, 특허 200억원, 문화 900억원, 미래 200억원, 영화 280억원, 스포츠 170억원, 관광 150억원)	
기본 조건		- 창업자·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	
출자 대상 및 신청 자격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산기술투자금융사 등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창업투자회사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산기술투자금융사 등
	신기술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신기술투자금융사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2017년 3월 15일(수), 14:00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중진계정은 2개월(단, 중진계정은 10% 이상 유치 조합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그 외 계정은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
- *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LLC형 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 조합 결성이전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고, 조합의 핵심인력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함. 단,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함

2. 상세 분야별 출자 계획

※ 신청 현황에 따라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 선정 가능

※ 증진·문화계정의 경우, 당사 기준에 따라 '16년 4분기 투자 집행률이 높은 상위 10개사에 대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p.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단위 : 억원)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목표액
중 진	청년창업	400	668
	액셀러레이팅	210	350
	고급기술인력창업	700	1,169
	여성기업	100	150
	스몰 M&A 매칭	200	400
	해외진출	300	750
	소 계	1,910	3,487
특 허	특허기술사업화	200	300
문 화	방송·드라마	300	500
	콘텐츠기업육성	300	600
	NEW 콘텐츠	100	200
	소액투자전문	200	300
	소 계	900	1,600
미 래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80	120
	가상·증강현실 (VR·AR)	120	240
	소 계	200	360
영 화	중저예산한국영화 ^{주1)}	280	480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주2)}	170	289
관 광	관광산업육성	150	270
합 계		3,810	6,786

주1) 영화계정 중저예산한국영화 분야는 2개 조합 선정 예정
(결성목표액 240억원, 모태출자예정액 140억원 X 2개)

주2) 스포츠계정 스포츠산업육성 분야는 2개 조합 선정 예정
(결성목표액 170억원, 모태출자예정액 100억원 / 결성목표액 119억원, 모태출자예정액 70억원)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계 정	분 야	조합 형태	중점지원 해당여부
중 진	청년창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주1)}	○
	엑셀러레이팅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주1)}	○
	고급기술인력창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주1)}	○
	여성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주1)}	○
	스몰 M&A 매칭	한국벤처투자조합	○
	해외진출	한국벤처투자조합	
특 허	특허기술사업화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문 화	방송·드라마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주2)}	○
	콘텐츠기업육성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주2)}	○
	NEW 콘텐츠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주2)}	○
	소액투자전문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주2)}	○
미 래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주2)}	○
	가상·증강현실 (VR·AR)	한국벤처투자조합	○
영 화	중저예산한국영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 ^{주2)}	○
스 포 츠	스포츠산업육성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관 광	관광산업육성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주1) 한국벤처투자조합(LLC)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주2) 한국벤처투자조합(LLC, 신기술사업금융사)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사가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4.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 중복 신청은 2개까지 가능하나 유사계정 내 중복 신청은 불가

- 유사계정 A : 중진/특허 계정
- 유사계정 B : 문화/미래/영화 계정
- 유사계정 C : 스포츠/관광 계정

<신청 예시> ① 청년창업 + 콘텐츠기업육성, ② 가상·증강현실(VR·AR) + 스포츠산업육성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최대출자 비율
중진	청년창업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주2)}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약정총액의 30% 이상 신주보통주로 투자하여야 함 ①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②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60%
		B (신설사 제한계정 ^{주3)})		
	액셀러레이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주2)}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건당 투자액은 5억원 이내, 업체당 총 투자액은 10억원 이내이어야 함 	60%
	고급기술 인력창업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주2)}(창업지원법상 창업자인 바이오기업 포함)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약정총액의 30% 이상 신주보통주로 투자하여야 함 * 고급기술인력 기업(① 또는 ②) ①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또는 등기임원의 50% 이상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 b. 이공계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7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생산, R&D 등의 분야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내외 민간연구소 등 R&D 인력 c.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 학위소지자는 수료자를 포함 	60%
		B (신설사 제한계정 ^{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임직원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의 20% 이상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단, 이 경우에는 투자 집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b.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등 * 학위소지자는 수료자를 포함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① 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 ②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 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③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35% 이상인 경우 	70%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 의무 비율	최대출자 비율
	스몰 M&A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기업 또는 펀드에서 M&A 딜 발굴 후 매칭투자를 요청하는 경우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아래 ①, ②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①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팀스(TIPS) 등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선도 중소·중견기업에 투자(양수기업 지분) ② 선도 중소·벤처기업이 인수하고자 하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또는 팀스(TIPS) 등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 투자(양도기업 지분) 	50%
	해외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 해외진출의 범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수출비율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해외법인(국내 중소·벤처기업 지분율이 50% 이상)등. 단, 이 경우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 	40%
특허	특허기술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8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의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외). 단, IP 지원사업 대상 우수IP보유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IP프로젝트 또는 IP서비스기업에 약정총액의 10% 이상 투자 * 산업재산권 정보의 분석·제공·DB구축,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거래·관리,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자문, 특허기술 사업화 관련 전문 컨설팅 등 ** 산업재산권의 창출·매입·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또는 직접매입 *** IP-R&D, 특허기술상 등 9개 특허청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수혜기업(약 4천개) 	70%
	공공기술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IP서비스기업 또는 IP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80% 이상 투자하되, 투자 전 발명진흥법상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등록특허에 대한 IP가치평가를 받아야 함(IP서비스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외). 단,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 * 최근 5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기술이전법상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았거나, 본 조합 투자 이후 6개월 이내에 이전받을 기업 	70%
문화 주4)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드라마 관련 콘텐츠 및 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 투자금 우선회수 금지 및 약정총액의 50% 이상은 메인투자^{주5)} 의무 * 방송관련 콘텐츠 및 기업에는 방송콘텐츠, 제작사, MCN 등이 포함되며 드라마 관련 콘텐츠 및 기업에는 웹, 앱 등 다양한 방식의 드라마 프로젝트, 제작사 등이 포함 ** 영화 투자는 20% 이내로 제한함 	60%
	콘텐츠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기업 지분*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되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문화산업 전반 관련 기업에 투자가능. 단, 약정총액의 20% 내에서만 타 산업에 투자가능하며 해당금액은 별도 계좌 관리(문화산업과 관련된 타 산업**에 한함) 	50%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 의무 비율	최대 출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기업 지분이란 콘텐츠 기업 M&A 투자를 포함한 콘텐츠 기업 지분 투자 ** IP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 개발 산업 등 *** 국책은행 등이 참여할 경우 투자 의무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NEW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콘텐츠 및 콘텐츠와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 벤처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되 영화, 드라마 프로젝트의 경우 순제작비의 15% 이상이 CG 제작비에 사용되거나 CG 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만 투자 가능 * NEW콘텐츠란 문화산업과 ICT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콘텐츠 	50%
	소액투자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원천IP, 문화콘텐츠 초기기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소액투자. 분야에 대한 제한없이 문화산업 전반에 투자가 가능 함. (단, 건당 투자액은 5억원 이내, 업체당 총 투자액은 20억원 이내로 제한함.) * 원천 IP란, 소설·웹툰 등 타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한 1차 창작 콘텐츠를 의미하며 동 펀드에서 기 투자한 원천 IP를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에 투자(프로젝트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도 금액에 상관없이 소액투자자로 인정함 	70%
미래	디지털 콘텐츠 펀드 ^{주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디지털콘텐츠 기업 및 초기 디지털콘텐츠 프로젝트에 70% 이상 투자. 단, 기업중점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투자비율은 최소 60% 이상 설정(디지털콘텐츠 프로젝트 10% 내외) ○ 정성적 가치평가를 통해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주7)}에 신주보통주 투자비율 40% 이상 투자 ○ 투자 의무비율 산정시, 문화계정 조합에서 기투자한 기업(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투자는 80%만 인정 * 주목적 이외 분야는 정보통신산업에 한정하여 투자 가능 ** 향후 미래계정 디지털콘텐츠 펀드 선정시, 창업초기 디지털콘텐츠 펀드의 결성시기별 약정총액 대비 투자금액 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고려 	70%
	가상·증강현실 (VR·A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증강현실 관련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가상·증강현실 게임 이외 게임 투자는 금지. - 가상·증강현실 관련 매출이 투자기간내 발생한 기업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 -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한국인인 해외기업도 주목적투자대상에 포함 (약정총액 20%이내) 	50%

계정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및 투자 의무 비율	최대출자 비율
영화	중저예산한국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에 100% 이상(타 분야 투자 금지) 투자하되, 중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55% 이상, 저예산 한국영화에 약정총액의 15% 이상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예산 한국영화란 순제작비 50억원 이하의 한국영화 2) 저예산 한국영화란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한국영화로서,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인정, 국제영화제 출품 등 영화적 완성도와 작품성이 기대되는 작품을 말함 *기획개발투자^{주8)}(시나리오 완성이전 단계투자) 가능(제작 착수로 인한 후속투자 시 중예산 초과 한국영화투자도 중예산 의무투자로 인정) **기획개발투자, 영진위 제작지원작(독립, 예술, 저예산,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지원) 투자 및 투자작품이 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인정, 국제영화제 출품 시 당해 집행액 만큼 중예산 초과 한국영화투자도 중예산 의무투자로 인정 	60%
스포츠	스포츠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70% 이상을 투자 	60%
관광	관광산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산업, 관광산업 특수 분류상 연관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되,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주2)}에 약정총액의 15% 이상을 투자(단, 건당 투자액은 5억원 이내, 업체당 총 투자액은 10억원 이내)하여야 하며,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15% 이상을 투자(단, 하기 3개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은 약정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란,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분야 벤처기업, 2) 한국관광공사가 발굴한 관광벤처기업 및 클라우드 펀딩 유치 성공 기업·프로젝트, 3) 융복합 및 혁신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 	60%

- 주1)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고급기술인력창업, 여성기업의 경우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제안 내용을 규약에 반영(예> CB/BW/RCPS 방식 투자 시, YTM 3% 이하로 적용 등)
- 주2)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란, 최초 투자 당시 ① 창업지원법상 창업자 중 업력이 3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재창업자 포함) 또는 ② 창업자로서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5% 이상이며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중소·벤처기업을 말함
- 주3) 신설사 제한경쟁 분야는 신설 창업투자회사(신설(예정) LLC 포함)간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
* 신설 창업투자회사(신설(예정) LLC 포함)의 범위는 1) 등록 2년 이내 창업투자회사 및 LLC 또는 2)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바 없는 등록 5년 이내 창업투자회사 및 LLC
- 주4) 문화계정 공통적용 투자 의무 비율(콘텐츠기업육성 분야 제외)
- 약정총액의 10% 이내에서만 문화산업 외 타 산업에 투자 가능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 콘텐츠기업육성 분야는 약정총액의 20% 이내에서만 문화산업과 관련된 타 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해당금액은 별도계좌 관리
- 원칙적으로 재투자 금지, 다만 매년 자펀드 투자 현황 점검(전략적출자자관련 투자집중여부, 자펀드 수익률 등) 후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재투자 허용여부 결정
- 주5) 재무적 투자자 중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최대 투자자
- 주6) 펀드 제안시 가치평가 방안 제시 및 투자시 정성적 가치평가 근거 자료 제출 필요

주7) 디지털콘텐츠펀드 적용사항

- 디지털콘텐츠 정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CG, 4D, 가상현실, 홀로그램, 스마트콘텐츠 등 ICT 기술과 융합하여 나타나는 콘텐츠를 말하며, 차세대방송(ICT+방송), 엔터테인먼트(ICT+게임), 정보콘텐츠(ICT+Life), E-Learning, SNS 콘텐츠(ICT+정보공유) 등
- 영화·드라마 프로젝트의 경우는 순제작비의 15%이상이 CG 제작비에 사용되거나 CG기업이 지분 참여하는 경우만 투자 가능
- 디지털콘텐츠 산업이외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SW 등 정보통신산업에 한하여 투자 가능
- 게임산업에 대한 투자는 약정총액의 20%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
- 디지털콘텐츠기업 투자 시 해당 기업에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을 제공하고 표준계약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 디지털콘텐츠 제작초기 정의 :
 - ①게임: 퍼블리셔 계약 전&CBT 전, ②웹툰제작: 유통 플랫폼(인터넷 포털서비스 등)에 연재계약 전, ③인창조기업이 제작하는 프로젝트, ④음원 : (온/오프라인) 유통사와의 유통계약 전, ⑤기타 특별조항원이 초기 단계라고 인정하는 경우

주8) 기획개발투자시 준수사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 배제
-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 포함) 및 계열사 배제
- 제작사 지분투자 금지
- 제작 중인 영화 투자 금지
- 개발비 투자 후 3개월 이내 제작 착수 금지
- 프로젝트 별 3억원 초과 투자 금지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중진	특허	문화	미래	스포츠	영화	관광
창업초기 등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	○	○	○	○	○
신청 자조합 특성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동일한 분야 투자한 경우	○	○	○	○	○	○	○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평가)	○	○	○	○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	○	○	○
자조합 운용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조합을 해산하고, 자조합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	○	○	○	○	○	○
조합 존속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			○			
결성목표액을 초과하여 출자자 모집을 제안하는 경우	○		○	○	○		○
문화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민간 재무적 투자자가 조합 출자에 참여한 경우			○	○			
미래부의 디지털콘텐츠 지원사업과 연계한 구체적 투자방안을 제시한 경우				○			
미래부가 권장하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적용 기업에 투자하여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제작·유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			
영화진흥위원회가 권장한 표준계약서 적용 등 영화 산업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한 경우			○			○	
증저예산 영화 및 기획개발 투자실적이 있는 조합						○	
결성시기별 약정총액 대비 투자금액 비율이 높은 경우	○		○				
약정총액의 15% 이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단, 수도권 지역은 제외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해당분야 투자인력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					
성공한 선배기업이 설립한 신설창투사인 경우 (단, 창업초기 분야에 한함)	○						
본점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운용사(창투사, LLC)인 경우	○						

2. 선정 배제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선정 배제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2)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마.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 ② 자기자본의 5배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 중인 조합의 투자예정자산(약정금액의 80% - 기투자금액)의 합이 전문인력*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전문인력의 인정 기준은 각 투자조합의 소관 법령에 따름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총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총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text{억원}$$

3. 기존조합의 신규조합 참여제한 규약 관련
 - 신청조합 핵심인력이 신청자조합을 포함하여 상기 투자조합 운용한도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조합 규약에 핵심인력의 동(同)신규조합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4.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 및 평가 보류된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 상의 기간까지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 ※(적용시기) 한국모태펀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접수마감 되는 출자사업부터 동 배제사유 적용
-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회사(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 ※(적용시기) 한국모태펀드 2017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접수마감 되는 출자사업부터 동 배제사유 적용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인 경우
 - 라.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바. 핵심인력(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사.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신규로 다른 결성 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참여하는 등 신청 자조합의 핵심인력이 선정 배제 사유의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신규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태펀드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모태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 및 문화계정의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출자유치 제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제한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 단, 다음의 경우는 모태조합이 우선손실충당* 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고급기술인력창업, 여성기업 분야 2) 중진계정에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가 신규로 출자에 참여하거나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할 경우 3) 특허계정. 이 경우 약정총액 대비 모태조합의 후순위 출자금액 비율만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후순위 출자의무 부여 예정 *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우선손실충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2), 3)의 경우 수익이 일정수준 이상(특허계정의 경우 기준수익률의 2배(10%)이상) 발생할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모태조합에 우선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비율'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 ·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에 따라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안서 접수 마감일기준)에 신규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 (예 :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추가 증액 방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결성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최초 결성액이 최소 결성 규모의 70% 이상인 경우 우선 결성 가능 ·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조합 규약(안),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항 목	내 용												
<p>자조합 존속기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75 360 938 405">구 분(분야)</th> <th data-bbox="938 360 1139 405">존속기간</th> <th data-bbox="1139 360 1342 405">투자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5 405 938 450">관광계정 및 스포츠계정</td> <td data-bbox="938 405 1139 450">8년</td> <td data-bbox="1139 405 1342 450">4년</td> </tr> <tr> <td data-bbox="475 450 938 495">영화계정</td> <td data-bbox="938 450 1139 495">5년</td> <td data-bbox="1139 450 1342 495">4년</td> </tr> <tr> <td data-bbox="475 495 938 539">이외 분야</td> <td data-bbox="938 495 1139 539">5년 이상</td> <td data-bbox="1139 495 1342 539">4년 이내</td> </tr> </tbody> </table>	구 분(분야)	존속기간	투자기간	관광계정 및 스포츠계정	8년	4년	영화계정	5년	4년	이외 분야	5년 이상	4년 이내
구 분(분야)	존속기간	투자기간											
관광계정 및 스포츠계정	8년	4년											
영화계정	5년	4년											
이외 분야	5년 이상	4년 이내											
<p>관리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중진/특허/미래/관광/스포츠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 매 회계연도말 아래 관리보수 지급기준 중 선택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 or ② 투자잔액(분기말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 + 0.5%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으로 결성규모 적용요율 *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300억원 이하: 2.5%이내 /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3%이내 / 600억원 초과: 2.1%이내 (단, 액셀러레이팅 분야는 300억원 이하: 3%이내 / 30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2.5%이내 / 600억원 초과: 2.3%이내 적용) * 다음의 경우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진계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고급기술인력창업 분야 - 성공한 선배기업이 설립한 신설창투자(시가총액 800억원 이상 상장사 또는 최근 연도 말 기준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대주주인 경우) - 지역기반 운용사(수도권 이외 지역에 본점 소재) *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잔액 계산시 120%로 가중치 부여 가능 · 문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기준 2.0% 이내 *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잔액 계산시 120%로 가중치 부여 가능 · 영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 조합약정총액기준 2.0% 이내 - 결성일로부터 4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기준 2.0% 이내 												
<p>기준수익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고급기술인력창업, 여성기업,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가상·증강현실 (VR·AR) : 0% * 모태펀드 출자지분(콜옵션 대상 지분 제외)에 대해 기준수익률 0% 적용 · 방송·드라마, 콘텐츠기업육성, NEW콘텐츠, 소액투자전문 및 관광산업육성 분야: 3% 이상 · 해외진출, 스몰 M&A 매칭 : 3% 이상 *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3% 적용 가능 · 그 외 분야: 5% 이상 												

항 목	내 용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단, 문화계정은 30% 이내로 하며, 영화계정의 경우 모태펀드 지분에 한하여 50% 이내로 적용) · 기준수익률 이상의 IRR을 달성한 경우, 계단식으로 기준수익률 하향 조정 가능 (단,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한 기준수익률이 0%인 조합 제외) *예) 청산조합 IRR이 12% 초과, 17% 이하인 경우 : 기준수익률을 1%p. 하향 적용 청산조합 IRR이 17% 초과, 22% 이하인 경우 : 기준수익률을 2%p. 하향 적용 청산조합 IRR이 22% 초과하는 경우 : 기준수익률을 3%p. 하향 적용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고급기술인력창업, 여성기업에 한하여 모태조합이 수령한 전체수익이 IRR 5%를 초과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 이내에서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과 타출자자에게 별도 지급할 수 있음 · 전체 투자금액 대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신주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미래계정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신주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미래계정 가상·증강현실분야는 20%)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단, M&A펀드, 영화계정은 적용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 \left[\left(10\% \times \frac{\text{신주보통주 투자비율} - 40\%}{60\%} \right), 0 \right]$ </div> <p><미래계정 가상·증강현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 \left[\left(20\% \times \frac{\text{신주보통주 투자비율} - 40\%}{60\%} \right), 0 \right]$ </div> <p><미래계정 창업초기 디지털콘텐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 \times \text{Max} \left[\left(10\% \times \frac{\text{신주보통주 투자비율} - 50\%}{50\%} \right), 0 \right]$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분야*가 아닌 조합에서 전체 투자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에 투자된 투자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펀드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고급기술인력창업,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분야를 말함 · 미래계정 창업초기디지털콘텐츠 분야에 한하여 결성 후 2년 내 주목적 투자의무 비율 달성시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 미래계정 가상·증강현실 분야에 한하여 가상·증강현실 관련 콘텐츠 투자금액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모태조합이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모태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모태펀드 콜옵션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고급기술인력창업 분야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20% 범위 내에서 모태펀드는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콜옵션 부여.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행사 가격 : 해당 지분 원금에 일정 수준 복리 이자 합산 금액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원금} \times (1 + \text{결성당시 한은 기준금리} + 0.5\%)^{\text{경과기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기간 : 결성일로부터 투자기간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항 목	내 용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정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의 경우 타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으로 예외 적용 가능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 문화계정 프로젝트 투자 시 적용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배급하는 한국영화 프로젝트에 투자금지(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제외) - 원금보장식 대출성 투자 금지 (원금상환약정 금지) - 임금 체불 제작사 투자 금지 - 출자자 관련 프로젝트 중 제작완료 후 배급·유통 단계 프로젝트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제작한 프로젝트에 투자금지 - 주요 출자자가 메인투자자로서 관리하는 프로젝트 투자누계액은 조합 전체투자누계액의 40% 미만이어야 함 - 영화제작 이후 영화 배급·유통 단계(개봉60일 이전 이후)에 투자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비율에서 제외 준수 의무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완료 이전 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단, 선정 조합 규약 협의 시, GP 책임하에 문전사 의무등록 예외 조항 반영가능) - 자조합 메인투자 시 영화·드라마 스텝 인건비 별도계정 설치, 자조합부분투자시는 권고사항 -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공공기관 포함)가 수립한 표준계약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영상(방송영상 제작, 방송출연, 방송영상제작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 영화(근로, 시나리오, 투자) 관련 표준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영화산업 노사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표준 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 · 공연예술 관련 표준계약서 - 공연예술 분야 투자 시 해당공연에 대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 전산화된 예매정보(관객수 및 티켓판매금액)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함 </div>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계정 관련 적용사항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는 조합의 출자 및 관련 프로젝트는 투자금지 (단,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허용) 2. 계정 구분 운영 및 계정 별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의 자산은 중예산, 저예산 및 일반영화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3. 프로젝트 투자 관련 준수 의무 사항(중예산, 저예산 및 일반영화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별도 계좌 운용 -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 영화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분쟁중 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회사(관계자인 대표, 주주까지 포함) 관련 프로젝트는 투자 금지(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영화인 신문고 기준) - 스태프인건비 체불방지 조항 투자제작계약서 상 의무삽입 - 투자한 영화프로젝트는 개봉 전 스태프인건비 지급완료. 미이행 시 관련 업체 프로젝트 차기 투자금지 - 중예산 영화는 제작단계 기준 투자의무비율 60%이상을 크랭크 업 이전 작품에 투자 (단, 저예산 분야는 독립/예술영화 등의 개봉비용 투자 촉진을 위해 제외) - 연도별 투자실적 평가 및 피드백(조합결성 2년 내 결성총액의 50%, 4년 내 100%를 중저예산 및 일반영화에 누적 투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 '표준 시나리오, 근로, 상영, 투자 계약서' 의무 적용 (순제작비 10억 미만 영화는 영화산업 노사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표준계약서 적용을 권장하고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시급 준용으로 제작환경 개선의무를 대신함.) - 중저예산영화는 제출한 투자이행계획에 따라 투자 - 주요출자자(조합의 10% 이상 출자자) 관련 영화프로젝트의 경우 주요출자자가 메인투자자일 경우에만(직접제작영화는 투자금지) 허용되며 주요출자자들의 관련 프로젝트 투자총액을 조합 총 투자액의 50% 이내로 제한 - 동일 프로젝트에 연 투자실적 20% 이상 투자금지(단, 조합원 동의하에 인정가능) - 상기 투자의무비율 및 의무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기간의 관리보수 지급을 감하며, 2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음 </div>

IV.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용	비 고
'17. 3. 15.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7. 4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17. 7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선택 가능

가. 현장 접수 : 제안서 양식(붙임 1. 참조)에 의거한 제출 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나. 온라인 접수 : 신청 매뉴얼(붙임 2.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 (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제안서 제본 3부 별도 송부)

<http://install.k-vic.co.kr>

○ 접수 마감일

가. 현장 접수 : 2017. 3. 15. (수) 14:00

나. 온라인 접수 : 2017. 3. 15. (수) 10:00

* 온라인 접수는 공고시부터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는 24시간 접수하나, 접수 마감일은 10:00까지만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제안서 제본 3부는 접수 마감일 14:00까지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현장 접수할 필요 없음)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7. 2. 22. (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VI.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VII.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현장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4층

- 문의 방법

가. 중진, 특허계정 : 02-2156-2015, fof@k-vic.co.kr

나. 문화, 미래, 영화, 스포츠, 관광계정 : 02-2156-2456, fof@k-vic.co.kr

다.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7. 2. 22.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대표이사/주주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대주주의 변동 횟수, 자기 자본 순이익률, 대표이사 업계 경력
	재무안정성	자본충실도, 총자산 수익률
	조합운용실적	청산조합 수익률, 모태펀드 자펀드 평가수익률
	투자실적	최근 결성 조합의 약정총액 대비 누적 투자금액, 창업자 투자 비율, 전문인력당 평균 미투자잔액
	준법성	최근 법규 등 위반 내용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평균),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핵심인력 투자실적	최근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및 투자 기업수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편/참여인력이 팀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평균), 핵심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기간(평균),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존재 여부
가점 등	공고문 II-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엑셀러레이팅 분야]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운용사	주주/경영진	대표펀드매니저 지분율, 유한회사 설립 여부, 유한회사 사원과 조합운용인력의 일치 여부
	경영시스템	운용사의 조합 출자 참여도, 벤특법상 전문인력 수
조합 운용 능력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평균),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핵심인력의 상장사 등 경영 참여 경력
	대표펀드매니저 투자 실적 등	최근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및 투자 기업수, 핵심인력이 투자 또는 경영 참여한 업체 중 IPO 등 실적
	팀웍 및 관리능력	대표펀드매니저와 참여인력이 함께 근무한 기간, 별도의 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존재 여부, 산업 및 금융 경력의 조화 정도
가점	공고문 II-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30점, 조합운용능력 7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